

(參 照)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  
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5. 7.

제 출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법률 제4741호)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관련조례를 관련법규에 맞춰 새로이 정하고, 기존의 알바 및 여비조례는 폐지 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비용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

- 비 등)
- 동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3. 주요골자
- 의원의 비용지급 종류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등으로 정함(안 제2조)
  -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월 350,000원 하고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안 제3조)

- 회의수당은 회의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1일 50,000원 하고 회의 종료일에 지급(안 제4조)
  -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경우로 하고 국내여비 기준표와 국외여비 기준표를 적용지급(안 제6조·제7조)
  - 종래의 비용지급 규정안 일비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부칙 제2항)
4. 제정조례안 : 별첨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반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16,200	10,500

<비 고>

1.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요금의 정액은 교통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요금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을 말하며, 당해철도 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요금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7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 의 장	· 2등급이 상 등급구 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 2등급이 상 등급구 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1등 정액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140	170	195
					25	130	107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			
					25	90	78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25	72	58			
의 원	· 등급구별 이 없는 경 우에는 그 승차에 요 하는 실비 액	· 등급구별 이 없는 경 우에는 그 승선에 요 하는 실비 액	2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130	155	180
					20	114	81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			
					20	74	59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20	55	44			
의 원	· 공무상의 사유로 인 하여 급행 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 하여 침대 요금을 필 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 정액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130	155	180
					20	114	81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			
					20	74	59			
의 원			2등 정액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130	155	180
					20	55	44			
의 원			2등 정액		라등급	라등급	라등급	130	155	180
					20	46	37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 (3) 유럽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 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밀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참 고 자 료

第32條 (議員의 議政活動費等) ① 地方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다음 名號의 費用을 지급한다.

1. 議政資料의 蒐集·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다만, 議政資料의 蒐集·研究를 위한 補助活動의 費用은 市·道義會議員에 한한다.
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
3. 會期中에 지급하는 會議手當

② 第1項 名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5條 (議政活動費·會議手當 및 旅費의 支給基準)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4]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제15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50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35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 (제15조 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 · 도 의 회 의 원	일 60,000원 이내
시 · 군 · 자 치 구 의 회 의 원	일 50,000원 이내

[별표 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제1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준액	철 도	선 박	항 공	자 동 차	현 지 교통비	숙 박 비	식 비
		운 · 임	운 임	운 임	운 임	(1일당)	(1야당)	(1일당)
시 · 도	의 장 · 부 의 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시 · 군 · 자 치 구	의 장 · 부 의 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6,500	16,200	10,500

<비 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 (제15조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지 급 기준액	항 공 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 일 미 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 일 상
시 · 도	의 장 · 부의 장	1등정액	30	147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25	130	107	140	170	195
시·자치·군구	의 장 · 부의 장	1등정액	25	130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20	114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경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